

전력거래소 공급자 윤리행동강령

2014. 9. 1. 제정

전 문

전력거래소는 부패방지 및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통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경쟁력있는 동반성장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전력거래소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전력거래소와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을 높이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전력거래소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합니다.) 지켜야 할 기준이며, 전력거래소는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일반 요건

전력거래소의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전력거래소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세부 요건

I. 윤리적 기준

- 1.1 공급자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거래소의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1.2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 1.3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당사 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1.4 공급자는 거래소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5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사이트(www.acrc.go.kr) 또는 전력거래소 신문고(www.kpx.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II. 사회적 기준

- 2.1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2.2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 안됩니다.
- 2.3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 2.4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III. 환경적 기준

- 3.1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3.2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3.3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 3.4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